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포장·광고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8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포장·광고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2026년 5월 15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판매·증여, 판매·증여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Ⅲ. 검토의견

1. 포장·광고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 기준 위반행위 및 제품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을 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표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의2(포상금) ① ----- ----- ----- ----- -.
<신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설>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1.·2. (생략)	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¹⁾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안전확인대상

1)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²⁾으로 구분하여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적합 확인을,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³⁾에 대해서도 살생물물질의 경우 물질승인⁴⁾, 살생물제품의 경우 제품승인⁵⁾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⁶⁾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승인·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생품 및 살생물제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증여 또는 판매·증여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⁷⁾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회수·폐기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3)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명령⁸⁾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⁹⁾를 두고 있음.

[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예산	150	150	150	150
집행액	120	119	78	29
집행 건수	576	690	395	136

-
- 나.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 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신고 대상	제35조 제1항 위반	■다음의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자가. 생활화학제품 -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 준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안생품 - 제품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안생품 - 사용방법, 신고·승인 사항 등 안생품 정보 표시를 하지 않은 안생품 나. 물질승인을 받지 않거나 취소된 살생물의 물질 다. 살생물의 제품 - 제품승인을 받지 않거나 취소된 살생물의 제품 - 살생물의 물질 성분, 위험성 등 살생물의 제품 정보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제37조 제1항 위반	■다음의 제품 회수·폐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 -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 새로운 위해성이 확인된 안생품 또는 살생물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의 권고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제품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위반신고서(증거자료 포함) 제출
포상금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5~30만원 차등 지급(1인당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

한편, 현행법 제34조¹⁰⁾에서는 안생품과 살생물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의 명확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안생품 또는 살생물의 제품에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의 제품 또는 살생물의 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의 제품 또는 살생물의 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의 제품 또는 살생물의 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안전한 제품의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2항).

그러나 이러한 포장·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에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감시 활동 유인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포장·광고 기준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건수	882	768	580	195

이에 개정안은 포장·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등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활동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¹¹⁾.

참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¹²⁾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촘촘한 유통감시를 위해 국민참여 기반의 감시활동 확대가 필요하므로 포상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임.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문 의 처
02)6788-5536

-
- 2. 기만적인 표시 · 광고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 4. 비방적인 표시 · 광고